

축산물 ([] 소 [] 돼지 [] 말) 등급판정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							
신청인	①성명	②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
	③업소명	④업태유형							
	⑤주소 (전화번호:)								
도축장	⑥업체명	⑧사업자등록번호							
	⑦대표자								
	⑨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			
사육 농가	⑩성명	⑪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
	⑫농장명	⑬농장식별번호							
	⑭주소 (전화번호:)								
⑮접수번호	⑯이력 번호	⑰가축의 종류	⑱품종	⑲성별	⑳생체량 (총 마릿수)	㉑연령 (월령)	㉒등급 판정 제외부위	㉓돼지냉도 체 육질 측 정 여부	㉔소·말도체 육량등급표시 여부

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㉕대리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

수수료	납부확인
「축산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50px; height: 50px; margin: 0 auto; border-radius: 50%;"></div>

유의사항

1. ① ~ ⑤란 및 ⑩ ~ ⑭란은 신청인이, ⑥ ~ ⑨란 및 ⑮ ~ ⑳란은 도축업 영업자가, ㉑ ~ ㉔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도축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.
2. ④란은 다음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 - 가. '업태유형'은 조합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집단급식소, 일반음식점, 식육가공업, 기타로 구분
 - 나. '조합'은 농협·축협 등 조합을 말하며,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으로 분류
 - 다. '식육포장처리업'은 식육포장처리업을 겸업하는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을 말함
 - 라. 축산물판매업은 '대형마트', '백화점', '슈퍼마켓' 및 '정육점'으로 구분하여 기재
 - 마. 기타는 자가도축을 말하거나 위 사항 외의 업태유형을 말함
3. ⑩ ~ ⑫란 및 ⑭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실제 사육자가 같은 경우에는 "신청인과 같음"으로 적습니다.
4. ⑬란은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인이 적습니다.
5. ⑮란의 접수번호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체의 구분을 위하여 도체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6. 돼지의 경우에는 ⑮·⑰ 및 ㉑란은 적지 않습니다.
7. 말의 경우에는 ⑮·⑰·㉑ 및 ㉓란은 적지 않습니다.
8. ⑰ ~ ㉑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습니다.
 - 가. ⑰란: 소·돼지·말
 - 나. ⑱란: 한우·젓소·육우·수입소(수출국명)
 - 다. ⑲란: 암·수·거세
 - 라. ㉑란: 소·말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(킬로그램)을,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 두수
9. ㉒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(예)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
10. ㉓란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을 희망할 경우 "O"를 적습니다.
11. ㉔란은 소·말 도체 육량등급 표시를 희망할 경우 "O"를 적습니다.
12. ㉕란은 도축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